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1. 신선 농산물, 절화, 식물, 기타 식물 기반 제품의 식물 검역 인증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

- COVID-19 대유행으로 항공 화물과 택배 우편의 이동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, 일부 수출국 국립식물보호기구(NPO)는 식물검역인증서 원본 제공을 요구하는 호주 검역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충고함
- 호주 검역당국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선 농산물, 절화, 식물, 기타 식물 기반 제품에 대한 수입 인증 요건을 변경하여, 수입업자가 수출국 검역당국 으로부터 종이 원본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, 인증서의 전자 사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
- 전자문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, 검역 당국은 수출국 국립식물보호기구 (NPO)에 직접 문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수출국 국립식물보호기구(NPO)가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를 사용할 예정임
- 검사 책임자는 문서 확인을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
 - 1) 수출국 검역당국이 전자문서를 호주 검역당국 지역 사무소로 직접 전달
 - 2) 수출국 검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전자문서 이용
 - 3) 수출국 검역당국에 의해 발행된 종이 원본이 있는 경우, 검사 시 잠재적인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품 또는 위탁물에 첨부할 것을 권고

- 이 규정은 수출국 검역 당국이 전자적 수단(예: ePhytos 또는 eCerts)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예정임
- 이 사안과 관련한 수출국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정부 공식 이메일 주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받을 예정임

* 출처 : 2020년 11월 15일, 호주 농수산부

2. 호주 식품 표준국 니코틴아미드 리보사이드 염화물(nicotinamide riboside chloride이하 NR) 식품 첨가 허용 방침

- 호주 식품표준국은 특별한 의료 목적의 식품(FSMPs)에서 비타민 B3의 허용 형태로서 니코틴아미드 리보사이드 염화물(nicotinamide riboside chloride 이하 NR)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규격의 개정을 검토 중
- 니코틴아미드 리보사이드 염화물(NR)은 인체 내 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(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+)의 전구체인 핵심적인 화학 물질로, 다른 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(NAD+) 전구체보다 부작용이나 확인된 안전 문제가 적다고 알려짐
- 관련 연구에 따르면, 니코틴아미드 리보사이드 염화물(NR)은 메타볼리즘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(NAD+)의 효과를 증가시키는데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
- 개정 검토중인 코드에 따르면, 비타민 B3는 S29-20(니코틴산 형태)과 S29-7(니코틴아미드(니코틴아미드라고도 함)의 형태로 FSMP에 첨가될 수 있음. 또한 니코틴산과 니코틴아미드의 형태로 특별한 의료 목적의 식품(FSMP) 이외의 특정 식품에 비타민 B3를 첨가하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짐
- 니코틴아미드 리보사이드 염화물(NR)은 현재 미국에서 식품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고 있으며, 유럽연합에서 비타민 B3의 원천으로서 새로운 식품 허가의 대상이 되고 있음. 캐나다 천연건강제품 성분 데이터 베이스에 등재되어 있기도 함

- 니코틴아미드 리보사이드 염화물(NR)의 안전성은 동물과 인간에 대한 수 많은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되었음. 니코틴아미드 리보사이드 염화물(NR)이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모집단의 특정 부분에 위험을 가한다고 결론을 내릴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
- 어린이용 식품에도 첨가물로 허용되며, 심각한 부작용 없이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 하루 최대 2g까지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음

* 출처 : 2020년 11월 21일, 호주식품표준국

3. 조리되지 않은 새우 검역 조건 충족 국가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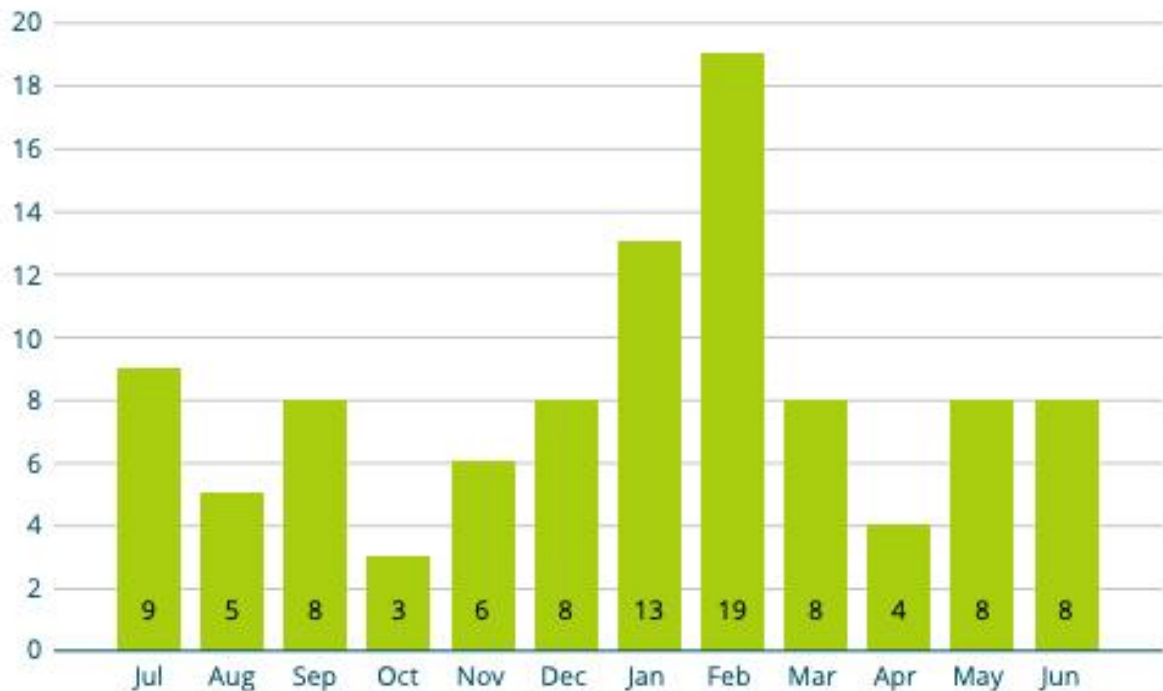
- 호주 농수산부는 조리되지 않은 새우의 수입과 관련하여, 호주의 강화된 검역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인한 새우 수출국의 명단을 공개함
- 아르헨티나,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 다루살람, 중국, 덴마크, 에콰도르, 인도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페루, 필리핀, 태국, 미국, 베트남의 관할 당국은 이들 국가가 조리되지 않은 새우들에 대한 호주의 중간 수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서면 확인서를 호주 정부에 제공했음
- 2020년 7월 1일부터, 식용으로 수입된 조리되지 않은 새우는 등부 능선을 따라 최소한 마지막 껍질 부분까지 남아 있는 소화관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
- 이번 조치는 엔테로시토존 간개파이와 관련된 생물학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
- 호주 검역 당국은 조리되지 않은 새우 수출국이 호주의 중간 수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예정임
-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도착하는 조리되지 않은 새우(재배 포함)의 모든 수입품은 생물학적 위험 관리를 위해 적절한 건강인증을 동반해야 함. 건강 인증이 동반되지 않은 수입 새우는 모두 재수출 또는 파기할 예정임

* 출처 : 2020년 10월 29일, 호주 농수산부

1. 호주 식품 리콜 통계(2019년 7월 ~ 2020년 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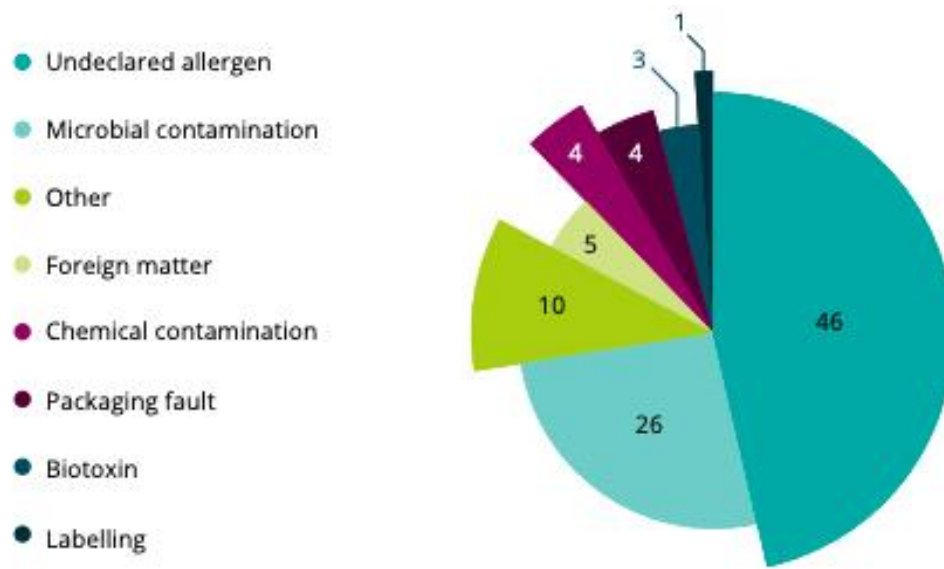
- 호주에서 발생한 식품 리콜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총 99건이었음. 리콜의 주요 원인은 미신고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미생물 오염이었음

<월별 식품 리콜 현황>



- 신고되지 않은 알레르겐 리콜은 2019년 32건으로 2018년 46건보다 감소했음. 최근 3년간 알레르겐으로 인한 식품 회수 요청이 고객 불만 사항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회사와 정부의 일상적인 검사가 강화된 결과로 보임
- 포장 오류는 신고되지 않은 알레르겐 리콜의 주요 원인이었음. 리콜 사유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은 식품업체가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리콜 이후 업체로부터 사후 리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임

<원인별 식품 리콜 통계 >



* 출처 : 2020년 11월 21일, 호주식품표준국

III 통관문제사례 관련

신고일	제품	제조업체	사유	Result/s	Units
21/10/2020	게살튀김 (Fried and seasoned crab)	Greenwell Food Co Ltd (Namdoo Food Co Ltd)	기준치 초과 박테리아 검출	330,000, 890,000, 400,000, 340,000, 440,000	CFU/g

IV FTA 이행이슈 관련

(해당 없음)